

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 [주식] 규약변경대비표

(시행일 : 2024.01.25)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0.(생략)</p> <p>21.(신설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종전과 동일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0. (종전과 동일)</p> <p>21. Class S-R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20.(생략)</p> <p>21.(신설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(종전과 동일)</p> <p>1.~20.(종전과 동일)</p> <p>21. Class S-R 수익증권</p>
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(본문 생략)</p> <p>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(종전과 동일)</p> <p>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(종전과 동일)</p> <p>②~③ (종전과 동일)</p>
<p>제39조(보수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1.~20.(생략)</p> <p>21.(신설)</p>	<p>제39조(보수)</p> <p>①~③(종전과 동일)</p> <p>1.~20.(종전과 동일)</p> <p>21. Class S-R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15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1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5</p>
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</p>	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</p> <p>①~②(종전과 동일)</p> <p>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</p>

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[제223조제3호](#)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1.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[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](#)에 해당할 것
2. ~3.(생략)
- ④~⑤ (생략)

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[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](#)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1.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[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](#)에 해당할 것
2. ~3.(중전과 동일)
- ④~⑤ (중전과 동일)